#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1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오기형·강준현·박민규

박홍배 · 복기왕 · 김한규

정진욱 • 박수현 • 박희승

모경종 • 윤건영 • 김남희

문금주 · 김태년 · 이용우

전진숙 • 민병덕 • 정준호

민형배 의원(19인)

##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이 자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중개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거래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한하여 정보교류차단장 치 설치 의무를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 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라고 정함(안 제2조제4호).
- 나.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사이에 이해상충을 방지하 기 위하여 정보교류차단장치 도입 의무를 마련함(안 제4조).
- 다.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5조)
  - 1)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 게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 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 2)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온라인 플랫

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 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 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라.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1)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2) 분쟁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사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는 합의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15조, 제17조부터 제 22조까지)
  -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

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함.

-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교류의 차단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 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 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 함.

##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25조)

-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2)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26조)

1)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

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2)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중 개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자료제 출명령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와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부터 이용대가를 받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 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 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중개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4.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가.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5천억원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매출액의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매출액을 산정한다.
  - 나.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 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판매금액을 산정한다.
- 5.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중개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 자를 말한다.
- 6.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 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

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다음의 사항이 함께 결합된 서비스
  -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 중개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 단 제공. 단 개인간 재화 또는 용역 거래와 관련한 연결수단 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 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청약의 접수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
- 7.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국내 소비 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제4조(정보교류의 차단) ①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그 영위

하는 다른 사업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2.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 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 3.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 4.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그 영위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 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2. 임원(비상근감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
- 3.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동으

로 이용하는 행위

- 4.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5.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은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적용한다. 이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

-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 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이용 형태. 특성 및 빈도
- 3.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사업능력 수준 및 그 격차
-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의존도
- 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량 및 특성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조(보복조치의 금지)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중개거래계약의 불리한 변경,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정지·제한 또는 중개거래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 2.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 3.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 4. 제2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 제3장 분쟁의 조정

- 제7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 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 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경우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정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대학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 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 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 거나 위촉하되, 해당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
- 제8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 제한) 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기준으로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임직원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될 수 없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 자의 임직원인 경우 또는 임직원이 된 경우 즉시 해촉(解囑)하여야 한다.
-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온라인 플랫폼

- 이용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 ② 소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의 심의·의결은 전체회의의 심의·의결로 본다.
- ③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 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협의회의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사항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 였던 경우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분쟁당사자의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조정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조정 신청) ① 분쟁당사자는 제5조·제6조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5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조·제6조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 및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로서 6 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을 한 때에는 그 시효가 당초의 조정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 로 본다.
-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 제12조(조정)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해당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1.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 2. 제5조·제6조에 따른 분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 3.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 4.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을 한 경우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1. 분쟁당사자 쌍방이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 정에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 2.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3.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을 신청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 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경우
- 4.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거부한 경우
- 5. 분쟁당사자가 조정의 신청 전후에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경우
- 6. 분쟁당사자가 조정의 신청 전후에 「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 7. 그 밖에 조정을 하여야 할 실익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협의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14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및 조치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

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2 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 2.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처분대상의 제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 3.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 4.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제16조(처분대상의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

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2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 제17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위반한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수 있다.
  - 1. 위반행위의 중지
  - 2. 재발 방지
  -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제18조(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해당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9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 의 자발적 해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구제 또는 거래질 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한 서면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 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 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개시하지 아 니하거나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의결을 신 청한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 정조치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과의 상호보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에 적절 하다고 인정될 것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 또는 심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1. 제32조제2항에 따른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2.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 ④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⑥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 제20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위반한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22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9조 및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한다.

- 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부 터 제85조까지를 준용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하다.

#### 제5장 보칙

- 제24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 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5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 개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

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 내용, 요구사유 및 제출기한 등을 명 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손해배상책임) ①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 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 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 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

- 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⑥ 법원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해당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비밀유 지명령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112조 및 제113조를 준용한다.

제27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공무원, 협의회에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협의회에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장 벌칙

-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 제6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4.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벌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감정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고발) ① 제29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제1항의 죄 중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③ 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 제33조(과태료)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는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2.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물건의 제출을 한 자
  -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4.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한 자
  - 5.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 ③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행위) 공 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중개거래계약부터 적용한다.